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 일반 규정

General Regulations
for International Mathematical Science & Creativity Competition

제정: 2024.08.02.

개정: 2025.10.27.

개정: 2026.02.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규정의 지위)

- ① 이 규정은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이하 “IMSCC”)의 지속적이고 공정하며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IMSCC는 본 일반 규정(General Regulations)과 당해연도 연례 규정(Annual Regulations) 및 조직위원회가 적법하게 공표한 부문별 세부규정 및 공고문에 따라 운영한다.
- ③ 연례 규정은 본 규정이 당해연도에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항 또는 예외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서 IMSCC의 상설적 기본원칙 또는 기본체제로 정한 사항은 연례 규정만으로 변경할 수 없다.
- ④ 부문별 세부규정 및 공식 공고는 본 규정 및 연례 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은 본 규정에 우선한다.

제2조(명칭)

- ① 대회의 국문 명칭은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로 한다.
- ② 영문 명칭은 「International Mathematical Science & Creativity Competition」이다. 명칭과 약칭 IMSCC는 조직위원회가 승인한 표기를 사용한다.
- ③ 공식 구호는 “상상력을 깨우는(Enlightening Imagination: EI)”으로 한다.

제3조(대회의 목적)

IMSCC는 STEAM 기반의 창의적 문제해결, 협력, 의사소통, 융합적 사고와 미래 역량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와 상호존중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 원칙)

IMSCC는 공정성, 투명성, 창의성, 학문적 정직성, 안전, 참가자의 존엄과 다양성 존중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5조(정의)

- ① “공식 프로그램(Official Programme)”이란 제6조의2에 따른 IMSCC의 표준 공식 프로그램과 개·폐회식, 시상식, 국제교류행사 및 그 밖에 연례 규정 또는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지정·공표한 행사를 말한다.
- ② “주관기관(Host Organization)”이란 당해연도 IMSCC의 개최 준비와 현장 운영을 담당하도록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③ “프로그램 주관기관(Programme Organizer)”이란 경진대회, 학술대회, 교사상, 학생포럼, 융합페스타 등 IMSCC의 개별 공식 프로그램을 담당하도록 당해연도 연례 규정에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 ④ 이 규정에서 “참가자”란 경진 참가자와 공식 프로그램 참가자를 말하고, “운영자”란 조직위원, 심사위원, 시상자, 사회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그 밖에 IMSCC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미성년 참가자”란 개최지의 관계 법령상 성년에 이르지 아니한 참가자를 말한다.

제6조(연례 규정)

조직위원회는 개최일·장소·Host Organization·부문·주제·참가자격·접수기간·심사 방법·시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연례 규정’을 공표한다.

제6조의2(IMSCC 공식 프로그램 체계)

- ① IMSCC는 STEAM 기반의 창의적 문제해결, 학술연구, 교육자 성장, 학생 참여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진대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학술·교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는 국제 콘퍼런스형 축제로 발전·운영한다.
- ② IMSCC의 표준 공식 프로그램(Standard Official Programme Framework)은 다음 각 호의 영역으로 구성할 수 있다.
 - 1. 국제수리과학창의경진대회(Competition)
 - 2.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Academic Conference & Research Programme)
 - 3. 국제융합교사상 및 교육자 프로그램(International STEAM Teacher Awards & Educator Programme)
 - 4. 학생포럼(Student Forum)

5. 융합페스타·체험·전시 프로그램(Convergence Festa, Experience & Exhibition Programme)

6. 그 밖에 IMSCC의 목적과 발전 방향에 부합한다고 조직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프로그램

- ③ 당해연도에 실제 운영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 운영방식 및 각 프로그램의 주관기관(Programme Organizer)은 연례 규정에서 정한다.
- ④ 조직위원회와 당해연도 주관기관은 개최국의 교육·문화적 특성, 참가자 구성, 시설 및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프로그램을 추가·조정하거나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IMSCC의 국제적·교육적 정체성과 기본 목적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각 프로그램 주관기관은 담당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IMSCC 전체 일정, 참가자 안전, 대외홍보 및 공통 운영기준에 관하여 조직위원회, 사무국 및 당해연도 주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식언어 및 공통 운영언어)

- ① 영어는 모든 IMSCC의 공식언어 중 하나이자 공통 운영언어(Common Working Language)로 한다.
- ② 당해연도 연례 규정은 개최국의 언어, 개최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 인접 국가·지역의 언어 또는 참가자의 접근성을 위하여 필요한 언어를 추가 공식언어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주요 규정·심사절차·안전·인권·윤리 관련 정보는 영어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공식언어로 번역·통역한다.
- ④ 복수 공식언어 문서 사이에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선언어 또는 공식해석절차는 연례 규정에서 정하고, 정하지 않은 경우 조직위원회가 공식해석을 확정한다.

제2장 조직과 책임

제8조(조직위원회)

- ① IMSCC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기본정책, 장기적 발전 및 국제적 운영을 담당하는 상설기구로 한다.
- ②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일반 규정(General Regulations) 및 연례 규정(Annual Regulations)의 제·개정
 2. 중장기 발전계획 및 국제화 전략의 수립
 3. 차기 주관기관(Host Organization) 및 개최국·개최지역의 선정
 4. 당해연도 및 차기 대회의 주요 주제와 공식 프로그램 체계의 승인
 5. 심사위원장의 위촉 및 심사체계에 관한 주요 사항
 6. 윤리·참가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
 7. 공식지정교구(OLM) 및 주요 경진체계에 관한 정책
 8. 국제협력, 후원 및 주요 파트너십에 관한 정책
 9. 그 밖에 IMSCC의 지속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사항
- ③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 융합과학문화재단(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EAM, FAS)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 ④ 조직위원회는 공동주최, 개최지 지원, 국제협력 또는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최기관·주관기관 또는 주요 협력기관의 장 중에서 공동조직위원장(Co-Chair of the Organizing Committee)을 위촉할 수 있다. 공동조직위원장의 역할과 위촉기간은 해당 연도의 개최체계와 역할을 고려하여 조직위원회가 정한다.
 - ⑤ 조직위원회는 IMSCC의 국제적 발전과 참가국 확대를 고려하여 다양한 국가·지역의 STEAM 교육, 수학·과학·기술·공학, 학술연구, 교육정책 및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 ⑥ 국제위원을 포함한 조직위원은 특정 국가·기관 또는 참가단의 개별 이해를 대표하기보다는 IMSCC 전체의 목적, 공정성, 국제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⑦ 조직위원 개별 위원 임기, 선임·연임·해촉, 회의 및 의결방법과 그 밖의 세부 운영사항은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의2(IMSCC 사무국)

- ① 조직위원회는 IMSCC의 지속적인 국제운영과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설 IMSCC 사무국(IMSCC Secretariat)을 둔다.
- ② 사무국은 조직위원회의 결정과 감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당해연도 대회의 준비 및 조직위원회 결정사항의 실행
 2. 차기 및 차차기 대회의 개최계획 수립과 후보 주관기관과의 사전협의
 3. 주관기관 선정 및 개최 인수인계(Host Handover)의 실무 지원
 4. 연례 규정, 공식 공고 및 공통 운영자료의 준비

5. 공식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주관기관 간 일정 및 업무 조정

6. 해외 참가국·참가기관 및 국제위원회와의 연락·협력

7. 후원기관, 기부기관 및 협력기관과의 실무협의

8. 대회 기록, 공식문서, 결과자료 및 조직위원회 자료의 관리

9. 국제홍보 및 대외협력 지원

10. 그 밖에 조직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

- ③ 사무국은 매년 현재 대회, 차기 대회 및 차차기 대회 후보계획을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다년간 순환 개최계획(Rolling Host Plan)을 운영한다.
- ④ 사무국의 설치기관, 책임자, 조직, 예산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주관기관 및 차기 개최계획)

- ① 당해연도 주관기관(Host Organization)은 조직위원회가 선정하고 연례 규정에서 지정한다.
- ② 주관기관은 조직위원회 및 사무국과 협력하여 당해연도 IMSCC의 개최 준비, 대회장 운영, 참가자 안전, 현장 인력, 시설, 응급대응 및 공식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을 책임진다.
- ③ 조직위원회는 매년 안정적인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대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다음 연도의 주관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정부·기관의 승인, 국제협의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대회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조직위원회와 사무국은 다음 연도 대회의 준비와 병행하여 차차기 연도의 개최국·개최지역 및 주관기관 후보와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조직위원회는 가능한 경우 다음 연도의 개최국 또는 개최지역, 주관기관 및 연례 주제(Annual Theme)를 당해연도 폐회식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 ⑥ 다음 연도의 연례 주제는 심사위원장, 심사위원회, 관련 분야 전문가 및 프로그램 주관기관 등의 제안을 참고하여 조직위원회가 확정한다.
- ⑦ 폐회식 당시 정확한 행사장 또는 세부일정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최국·개최지역 및 주관기관을 먼저 발표하고, 정확한 개최장소·일정과 그 밖의 세부사항은 차기 연례 규정에서 확정할 수 있다.
- ⑧ IMSCC는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대회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국제적 확장을 위하여 다른 국가·지역에서 순회 개최할 수 있다. 해외에서 개최하는 경우에도 본 일반 규정에서 정한 IMSCC의 기본 목적, 경진체계, 공정성, 참가자

보호 및 공식 프로그램의 기본정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

- ① 조직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위촉하고 각 부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각 부문의 심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홀수 인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문의 특성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직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 및 심사자료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 또는 심사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운영자가 특정 참가자 또는 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고 해당 심사 및 의사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윤리 및 참가자보호 체계)

-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윤리성 확보와 참가자의 인권·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윤리·참가자보호위원회(Ethics & Safeguarding Committee)를 둔다.
- ② 윤리·참가자보호위원회는 참가자의 인권·안전·윤리와 관련된 신고, 운영자 행동 강령 위반, 괴롭힘·차별·성희롱·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한 보복행위 및 그 밖에 본 규정에서 정한 윤리 위반 사건을 조사·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조직위원회에 권고한다.
- ③ 위원 중 사건 당사자 또는 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조사·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조직위원회는 당해연도 연례 규정(Annual Regulations)에 참가자보호·복지책임자 또는 담당부서(Safeguarding & Wellbeing Officer or Unit)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 및 신고방법을 참가자에게 사전에 공표한다.
- ⑤ 참가자보호·복지책임자 또는 담당부서는 신고접수 및 초기 보호조치를 담당하며, 구체적인 대응절차는 제5장에 따른다.
- ⑥ 윤리·참가자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사건의 조사 및 심의절차, 잠정조치, 제재와 불복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본 규정과 당해연도 연례 규정 또는 조직위원회가 정한 세부절차에 따른다.

제3장 참가

제12조(참가자격)

참가자격, 연령, 학년 및 부문별 제한은 연례 규정에서 정한다.

제13조(팀 구성)

팀의 최소·최대 인원, 지도교사 또는 팀리더의 자격은 연례 규정 및 부문별 규정 공고문에서 정한다.

제14조(미성년자 보호)

- ① 미성년 참가자는 관계 법령상 필요한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회기간 중 비상연락 및 보호·감독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해외 미성년 참가단은 체류 및 공식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의 안전·복지 및 행동을 감독하고 조직위원회와 연락할 성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연례 규정에서는 개최국 법령과 대회운영 여건에 따라 보호자 동의서, 책임자 지정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해외 참가단의 책임자는 소속 참가자에게 본 규정과 안전·행동수칙을 안내하고, 공식 프로그램 기간 중 참가자의 안전과 복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참가등록)

참가자는 공고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한 허위사실 제출은 참가자격 또는 수상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제16조(행동강령 및 선서)

- ① 모든 참가자와 운영자는 본 일반 규정, 당해연도 연례 규정 및 IMSCC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조직위원회는 참가자와 운영자가 IMSCC의 기본가치를 공유하도록 공식행사에서 IMSCC 선서(Oath)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조직위원회는 심사위원, 시상자, 사회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그 밖에 참가자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운영자에게 행동강령 확인 및 필요한 사전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보험·비용 및 공식 초청 지원)

- ① 조직위원회와 당해연도 주관기관(Host Organization)은 공식 행사일 및 공식 프로그램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행사장 시설·설비 및 참가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행사주최자 배상책임보험 또는 개최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 등은 당해연도 보험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IMSCC의 공식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별 참가자 또는 참가국 대표단의 여행자보험, 해외여행보험, 개인 의료보험 또는 그 밖의 개별 여행위험에 대한 보험을 대신하지 아니한다. 참가자는 필요한 경우 자신의 여행 및 체류에 적합한 보험을 스스로 가입하여야 한다.
- ③ 국내외 참가자 및 참가국 대표단은 원칙적으로 IMSCC 참가에 필요한 항공료, 비자 및 출입국 관련 비용, 개인 여행자보험료, 숙박비, 공식 지원범위를 벗어난 교통비 및 그 밖의 개인적인 여행·체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례 규정(Annual Regulations), 공식 초청장 또는 조직위원회와의 별도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초청한 기조강연자(Keynote Speaker), 심사위원, 공식 귀빈(VIP) 및 그 밖의 공식 초청인에게는 대회의 목적, 역할, 예산 및 초청조건을 고려하여 강연료, 심사비, 숙박비, 식비, 개최지 내 교통비 또는 그 밖에 조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IMSCC는 참가자의 경제적·지역적 배경과 관계없이 공정한 국제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원금, 기부금, 보조금, 협력사업 및 그 밖의 재원을 활용하여 참가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 ⑥ IMSCC는 원칙적으로 경진 참가비를 부과하지 않는 개방형 국제교육대회를 지향한다. 다만 해외 개최, 특별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례 규정에서 합리적인 범위의 비용부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⑦ 조직위원회와 주관기관은 기업, 재단, 학교, 대학,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후원금·기부금·보조금 또는 현물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⑧ 후원 또는 기부를 제공한 기관은 별도의 규정이나 조직위원회의 명시적인 결정이 없는 한 심사결과, 참가자격, 윤리·참가자보호 사건의 판단 또는 그 밖에 대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제18조(합리적 편의)

조직위원회와 주관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 또는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참가자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경진의 본질과 공정성을 부당하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합리적 편의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신청·제공절차는 연례 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4장 경진 운영

제19조(경진분야 및 표준 세부부문)

① IMSCC의 기본 경진분야(Official Competition Categories)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놀이분야(Play)
2. 창의분야(Creativity)
3. 메카트로닉스분야(Mechatronics)
4. 융합분야(Convergence)

② IMSCC는 대회의 역사적 연속성과 국제대회로서의 일정한 운영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준 세부부문 체계(Standard Division Framework)를 기본적인 운영모델로 한다.

1. 놀이분야(Play Category)

- 가. 놀이 I부 - 블록놀이(Block Play Division): 만 3세 미만의 영아 또는 이에 준하는 참가자·그룹
- 나. 놀이 II부 - 선형모델링 놀이(Linear Modeling Play Division): 만 3세 미만의 영아 또는 이에 준하는 참가자·그룹

2. 창의분야(Creativity Category)

- 가. 창의 I부: 만 3세~5세 또는 이에 준하는 참가자(해당 연령대의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다)
- 나. 창의 II부: 초등학교 1~3학년 또는 이에 준하는 참가자(해당 연령대의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다)
- 다. 창의 III부: 초등학교 4~6학년 또는 이에 준하는 참가자
- 라. 창의 IV부: 60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참가자

3. 메카트로닉스분야(Mechatronics Category)

- 가. 메카트로닉스 I부: 초등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참가자
- 나. 메카트로닉스 II부: 중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참가자

다. 메카트로닉스부: 고등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참가자

4. 융합분야(STEAM Category)

가. 아날로그 제품메이커부(Analog Product Maker Division):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참가자

나. 디지털 제품메이커부(Digital Product Maker Division):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참가자

다. 발명메이커부(Invention Maker Division): 고등학생·대학생·일반 참가자를 포함한 개방형 부문

라. 캡스톤디자인부(Capstone Design Division): 고등학생·대학생·일반 참가자를 포함한 개방형 부문

- ③ 제2항의 표준 세부부문 체계는 IMSCC의 지속성, 세대별 참여구조 및 본선 운영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권고적 기준으로 한다. 당해연도의 조직위원회와 주관기관(Host Organization)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본적인 연령구조와 경진구성을 존중하여 연례 규정을 수립하도록 노력한다.
- ④ 당해연도에 실제 운영되는 세부부문, 참가연령 또는 학년, 팀 구성, 경진주제, 심사방식, 심사배점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연례 규정(Annual Regulations)에서 확정한다. 국가별 학제 또는 연령체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연례 규정에서 이에 준하는 참가자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⑤ 조직위원회는 과학·기술 및 교육환경의 변화, 참가자의 구성, 개최국의 교육제도, 시설·예산·안전여건 및 대회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연례 규정에서 제2항의 세부부문을 추가·통합·분리·명칭변경하거나 해당 연도에 한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경은 IMSCC의 기본 경진분야와 대회의 목적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조직위원회는 새로운 과학기술, 융합교육 방식 또는 경진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부문(Demonstration Category) 또는 시범종목(Demonstration Event)을 설치할 수 있다. 시범부문의 참가자격, 심사방법, 시상 여부 및 운영기간은 연례 규정에서 정한다.
- ⑦ 시범부문 또는 새로 신설된 세부부문은 운영성과, 참가규모, 교육적 가치, 심사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표준 세부부문으로 편입할 수 있다. 새로운 기본 경진분야(Official Competition Category)를 신설하거나 기존 기본 경진분야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본 General Regulations를 개정하여야 한다.

- ⑧ 당해연도의 세부부문 신설·통합·변경·미운영 및 시범부문의 설치에 참가자의 준비와 참가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참가접수 개시 전에 연례 규정(Annual Regulations)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공식지정교구 및 재료·장비)

- ① IMSCC는 대회와 창립과 발전 과정에서 창의적 구조설계, 수리·과학적 모델링 및 융합적 문제해결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도구로 사용되어 온 교구를 공식지정 교구(Official Licensed Materials, 이하 “OLM”)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② IMSCC의 기본 OLM은 포디랜드(4D Land, Inc.)의 포디프레임(4Dframe), 슈퍼포디프레임(Super 4Dframe), 그리고 포디메카트로닉스(4D Mechatronics) 및 포디블록(4DBlocks)으로 한다.
- ③ 각 경진분야 또는 세부부문에서 사용하는 OLM의 사용조건은 당해연도 연례 규정(Annual Regulations) 또는 부문별 세부규정에서 정한다. 연례 규정은 필요한 경우 특정 OLM을 특정 부문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정할 수 있다.
- ④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경진에 필요한 OLM과 허용된 재료·장비를 스스로 준비한다. 조직위원회 또는 주관기관은 참가자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례 규정, 부문별 세부규정 또는 별도의 공식 공고에서 재료 또는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OLM 이외의 재료·부품·전자장치·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도구는 연례 규정 또는 부문별 세부규정에서 허용한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⑥ 새로운 과학기술, 교육도구 또는 창작도구를 IMSCC의 정식 또는 시범 경진에 사용하고자 하는 개발자, 제조자, 주관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은 IMSCC 조직위원회에 OLM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는 해당 도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OLM 지정 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한다.
 1. IMSCC의 목적 및 STEAM 교육과의 적합성
 2. 창의적 문제해결과 경진활동에의 활용 가능성
 3. 제품 또는 도구의 안전성 및 사용 적합성
 4. 품질과 규격의 일관성 및 경진조건의 공정성
 5. 참가자가 합리적으로 접근·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6. 지식재산권 및 적법한 사용권원의 확보 여부
 7. 그 밖에 조직위원회가 국제대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제출자료 및 프로젝트 보고서)

- ① 참가팀은 경진과정, 작품 또는 프로젝트의 목적·설계·제작·원리·결과 등을 기록한 프로젝트 보고서(Project Report)와 조직위원회가 요구하는 사진·영상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프로젝트 보고서는 IMSCC의 교육적·학술적 기록과 참가작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적으로 포함한다.
 1. 주제 선정 배경 및 목적(Background and Objectives)
 2. 계획·설계 및 제작과정(Planning, Design and Development Process)
 3. 사용 재료의 종류·수량 및 도구, 설계도·구조도 및 제작 단계별 사진 등 작품 또는 프로젝트의 구현 과정
 4. 작품 또는 프로젝트에 적용된 수학적·과학적·공학적 원리 및 그 밖의 STEAM 관련 개념
 5. 작품의 기능, 특징, 문제해결 과정 및 결과
 6. 평가·성찰 및 결론(Evaluation, Reflection and Conclusion)
 7. 인용·참고자료, 외부 자료, 공개소스 또는 생성형 AI 등을 사용한 경우 그 출처와 사용범위
 8. 그 밖에 조직위원회가 프로젝트의 이해와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 프로젝트 보고서의 기본 구성, 항목 및 작성체계는 연례 규정에서 정하는 「IMSCC 프로젝트 보고서 표준양식(Standard Project Report Form)」에 따른다. 이 표준양식은 IMSCC 참가작의 지속적인 기록·교육적 활용 및 필요한 경우 학술적 성과의 정리·게재와 연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 ④ 보고서, 사진, 영상, 프로그램 코드, 설계파일 및 그 밖의 제출자료에 관한 파일 형식, 분량, 파일용량, 영상시간, 해상도, 파일명 작성방법, 제출방법, 제출기간 및 마감일은 당해연도 연례 규정에서 정한다.
- ⑤ 경진분야 또는 세부부문의 특성상 프로그램 코드, 데이터, 설계파일, 작동영상, 실험자료 또는 그 밖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조직위원회는 연례 규정 또는 부문별 세부규정에서 이를 별도의 필수 또는 선택 제출자료로 정할 수 있다.
- ⑥ 제출자료의 저작권, 개인정보, 사진·영상의 이용, 연구·학술자료로서의 활용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의 개인정보·지식재산권 관련 조항과 참가신청 시 별도로 고지된 조건에 따른다.
- ⑦ 참가자는 자료 제출 후에도 작품의 완성도 향상, 안전성 보완, 경미한 구조·디자인 개선 또는 기능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작품의 핵심 목적, 주요 설계, 작동 방식 또는 기능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연례 규정에서 정하는 작품

변경신고서(Modification Report)를 해당 참가팀의 현장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정 접수처 또는 현장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독창성, 연구윤리 및 지식재산권)

- ① 참가자는 제출하는 작품, 보고서, 영상, 프로그램 코드 및 그 밖의 자료를 독창적이고 정직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그 밖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학술자료, 공개된 자료, 공개소스,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또는 그 밖의 외부 자료·도구를 실질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조직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참고문헌, 출처, 활용범위 및 사용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③ 표절, 위조·변조, 허위자료 제출, 타인의 성과에 대한 부당한 사용 또는 그 밖의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심사대상 제외, 감점, 실격, 수상취소 또는 그 밖에 본 규정에서 정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조직위원회는 심사를 통하여 우수성이 인정된 수상작 및 프로젝트 보고서를 Association for 4Dframe(A4D)의 학술지 게재 후보 연구물로 추천할 수 있다.
- ⑤ 추천 연구물의 게재 여부는 해당 학술지의 편집·심사 및 연구윤리 기준에 따르며, 저자 표시는 실질적 기여와 학술지의 저자자격 기준에 따른다. 최종 게재된 연구물에는 해당 학술지의 정책에 따라 DOI를 부여할 수 있다.
- ⑥ 학술지 게재 과정에서 필요한 저작권·이용허락·개인정보·미성년자 동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학술지 규정 및 별도의 동의절차에 따른다.

제23조(심사 및 결과의 정정)

- ① 심사는 공정성·독립성 및 일관성의 원칙에 따라 사전에 공표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② 제출자료심사·현장심사·온라인심사·발표·시연·질의응답·미션수행 등 구체적인 심사방법과 배점은 당해연도 연례 규정 또는 부문별 세부규정에서 정한다.
- ③ 동점 처리기준은 연례 규정 또는 부문별 세부규정에서 사전에 정한다.
- ④ 심사위원의 개별 점수·개별 의견·위원 간 토론 및 내부 심사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직위원회는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기준·평가항목별 배점·총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⑤ 심사위원의 전문적 판단 자체를 이유로 한 재심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점수의 계산·입력·집계 오류, 참가팀의 오인, 참가자격, 심사절차의 중대한 위반, 이해충돌 또는 규정 위반에 관한 이의는 연례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기할 수 있다.

- ⑥ 조직위원회는 점수 계산·입력·집계, 참가팀 표시 또는 수상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다. 결과 공표 후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가팀에 통지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정정사실을 공표한다.
- ⑦ 참가자 또는 참가팀이 본 규정, 연례 규정 또는 부문별 세부규정을 위반한 경우 조직위원회 또는 해당 심사위원회는 위반의 성격·정도 및 심사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경고, 시정요구, 감점, 실격 또는 수상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연례 규정 또는 부문별 세부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장 참가자의 안전·인권보호

제24조(존엄과 상호존중)

IMSCC는 괴롭힘, 차별, 성희롱, 성적 언동, 폭력, 위협, 스토킹 및 그 밖에 참가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25조(불필요한 신체접촉 금지)

- ① 운영자와 참가자, 참가자 상호 간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안전·응급상황 또는 공식 절차상 필요한 접촉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26조(신고 및 즉시보호)

- ① 누구든지 안전·인권·윤리 문제를 공식 신고채널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 ② 신고가 접수되면 참가자보호·복지책임자 또는 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조직위원회 및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즉시 보호대상자의 안전확보, 당사자 분리, 의료·심리·보호자 지원 및 증거보전 등의 초기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제27조(잠정조치)

참가자 보호 또는 조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직위원회는 최종 판단 전이라도 접근제한, 직무배제, 행사참여 제한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최종적인 책임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28조(조사절차)

- ① 접수 후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 초기 대응상황을 안내한다.
- ②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 중간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3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지한다.
- ③ 사건의 복잡성, 관계기관의 조사, 당사자의 사정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예상 일정을 관계자에게 통지한다.
- ④ 최종적인 불이익 처분 또는 제재를 결정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주요 사실관계와 문제된 사항을 알리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29조(비밀유지와 보복금지)

- ① 사건 정보는 참가자 보호와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한다.
- ② 신고, 진술 또는 조사협조를 이유로 참가자 또는 관계자에게 불이익이나 보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법령상 신고·제출의무, 안전확보 또는 적법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관계기관 연계)

- ① 법령상 신고·통보의무가 있는 경우 조직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② 그 밖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안전과 의사를 고려하여 의료기관·전문상담기관·법률기관·수사기관 등과의 연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윤리사건의 제재와 불복)

- ① 윤리·참가자보호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위반의 성격과 정도를 고려하여 경고, 행사장 퇴장, 직무배제, 수상 또는 참가자격 취소, 향후 IMSCC 참가·운영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현장의 즉각적인 안전확보를 위한 잠정조치는 제27조에 따른다.
- ② 최종 제재를 받은 사람은 연례 규정 또는 별도의 절차에서 정한 기간 안에 윤리·참가자보호위원회와 인적 구성이 독립된 재심기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재심기구의 결정은 IMSCC 내부절차상 최종 결정으로 한다.

제6장 개인정보·미디어·참가자 권리

제32조(개인정보·사진·영상 및 미디어 이용)

- ① 참가자의 개인정보는 대회 참가등록, 본인확인, 경진운영, 심사, 시상, 참가자 안전관리, 공식 기록 및 그 밖의 정당한 대회 운영 목적을 위하여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한다.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처리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참가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 ② 미성년 참가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동의 및 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 ③ 대회 운영, 기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진·영상 촬영과 홈페이지, SNS, 언론, 학술지, 홍보자료 등 외부 공개를 위한 이용은 그 목적과 범위를 구분하여 고지하고, 관계 법령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는다.
- ④ 미성년 참가자의 사진·영상 또는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홍보·학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권리와 안전을 고려하고 관계 법령 및 당해연도 개인정보·미디어 정책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제33조(참가작의 권리 및 이용허락)

- ① 참가작, 프로젝트 보고서, 프로그램 코드, 설계자료 및 그 밖의 참가자가 창작한 자료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참가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 ② 조직위원회가 참가작을 심사, 기록, 교육, 홍보, 전시, 학술발표 또는 학술지 게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위와 방법은 참가신청 시 고지된 이용허락 조건 또는 별도의 동의·이용허락 절차에 따른다.
- ③ 참가작의 학술지 게재, 출판 또는 그 밖의 이용을 위하여 추가적인 권리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해당 학술지의 규정 및 별도의 이용허락 절차에 따른다.
- ④ 참가자는 참가작에 타인의 저작물, 공개자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또는 그 밖의 외부 자료를 이용한 경우 제22조에 따른 출처표시 및 권리처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기록 및 증거보전)

심사자료와 사건 관련 자료는 각각의 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건 관련 원본자료는 조사 및 불복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의로 편집·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불가항력)

천재지변, 감염병, 전쟁, 정부명령, 시설사용 불가 또는 그 밖에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대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조직위원회는 일정을 변경·연기·축소하거나 대회를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중대한 변경)

- ① 주관기관 또는 프로그램 주관기관이 참가자의 참가자격·준비·평가·안전 또는 권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례 규정이나 공식 프로그램의 중대한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기본 경진분야, 공식지정교구(OLM), 대회의 핵심 목적 또는 본 규정에서 정한 상설적 기본체계에 관한 사항은 주관기관 또는 프로그램 주관기관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변경이 확정된 경우 조직위원회와 주관기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참가자에게 공표하고, 이미 참가를 준비하거나 등록한 참가자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해석)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조직위원회가 결정하되 참가자의 공정한 경쟁과 안전·권리보호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8조(개정 및 시행)

일반규정(General Regulations)의 제·개정은 조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하며 공표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